

[별표 6] <개정 2006.2.24>

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(제27제2항관련)

구 분	대 상 시 설	점 검 횟 수
1. 해빙기진단	석축·옹벽·법면·교량·우물·비상저수시설	연 1회(2월 또는 3월)
2. 우 기 진 단	석축·옹벽·법면·담장·하수도	연 1회(6월)
3. 월동기진단	연탄가스배출기·중앙집중식·난방시설·노출배관의 동파방지, 수목보온	연 1회(9월 또는 10월)
4. 안 전 진 단	변전설·고압가스시설·도시가스시설·액화석유가스시설·소방시설·맨홀(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)·유류저장시설·펌프실·승강기·인양기·전기실·기계실·어린이 놀이터	매분기 1회 이상(다만, 승강기의 경우에는 「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)
5. 위 생 진 단	저수시설·우물·어린이 놀이터	연 2회이상

비 고 :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·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.